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6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68829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등

원 고 주식회사 [redacted]

피 고 1.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보조참가인

[redacted]시장

피 고 2. [redacted]시장

3.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4.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피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보조참가인

[redacted]광역시장

변 론 종 결 2015. 7. 1.

판 결 선 고 2015. 8. 28.

주 문

1. 원고에 대하여,

가.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이 한 별지 처분 목록 기재 부과처분 중 각 가산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6

부과처분,

나. 별지 취득세 납부 내역 기재 각 취득세에 관하여, 피고 [redacted]시장이 2012. 10. 17. 한, 피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이 2012. 12. 4. 한, 피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이 2012. 12. 5. 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사이의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그 3/4은 원고가, 나머지 1/4은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과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보조참가인 [redacted]시장이, 원고와 피고 [redacted]시장 사이의 소송비용은 피고 [redacted]시장이, 원고와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사이의 소송비용은 피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이, 원고와 피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사이의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피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과 피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의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이하 '피고 [redacted]구청장'이라 한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 목록 산출세액란 기재 각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설대여(리스)업, 할부금융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고, 본점소재지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6

'[redacted]구 [redacted]로 [redacted], 12층([redacted]동, [redacted])'인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취득한 시설대여용 자동차 644대(이하 '쟁점 리스차량'이라 한다)를 원고의 지점 소재지이던 ① [redacted]시 [redacted]구 A빌딩 [redacted]호 또는 [redacted]시 [redacted]구 [redacted]로 [redacted]([redacted]동, [redacted]사옥), ② [redacted]구 [redacted]로 [redacted], [redacted]층([redacted]동 [redacted]가), ③ [redacted]구 [redacted]로 [redacted], [redacted]층([redacted]동)을 사용본거지로 하여 등록하는 한편, 위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인 [redacted]시, [redacted]구 [redacted]구, [redacted] [redacted]구에 쟁점 리스차량에 관한 각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쟁점 리스차량 중 2011. 1. 1. 이후 취득한 시설대여용 자동차들(이하 '이 사건 리스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redacted]시, [redacted]북구, [redacted]구에 취득세를 납부한 내역은 별지 취득세 납부 내역 기재와 같다.

다. 피고 [redacted]구청장은 2012. 9. 10. '원고의 [redacted], [redacted], [redacted] 지점(이하 '이 사건 각 지점'이라 한다)은 각 인적·물적 요소가 없는 허위 사업장으로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사용본거지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쟁점 리스차량에 관한 취득세 납세지는 원고의 본점이 소재한 서울특별시이므로, 원고는 쟁점 리스차량에 관한 취득세를 서울특별시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쟁점 리스차량에 관하여 각 취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2. 9. 28.경 피고 [redacted]시장에 대하여, 2012. 10. 29.경 피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이하 '피고 [redacted]구청장'이라 한다)과 피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이하 '피고 [redacted]구청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 [redacted]시장은 2012. 10. 17. '경정청구 중 청구기간이 경과된 건이 있고,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권이 [redacted]시에 있다'라는 이유로, 피고 [redacted]구청장은 2012. 12. 4. '지방세기본법 제51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6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고, 원고의 취득세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피고 [redacted]구청장은 2012. 12. 5. '원고가 [redacted]구를 사용본거지로 신고하고 차량을 취득한 후 취득세를 납부한 것은 법적 하자가 없고,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각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하는 뜻을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① 2012. 11. 30. 피고 [redacted]구청장의 쟁점 리스차량에 관한 각 취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② 2012. 12. 7. 피고 [redacted]시장, [redacted]구청장, [redacted]구청장의 각 경정거부에 불복하여 각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4. 6. 30. ① 피고 [redacted]구청장의 쟁점 리스차량에 관한 각 취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2010. 12. 31.까지 취득한 리스차량에 관한 각 취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 및 이 사건 리스차량에 관한 각 취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재조사 결정을 하였고, ② 피고 [redacted]시장 및 피고 [redacted]구청장의 각 경정거부 취소 심판청구에 대하여, 그 중 원고가 2010. 12. 31.까지 취득한 리스차량에 관한 취득세 경정거부 부분의 각하 및 이 사건 리스차량 중 용인시 또는 대구 북구를 사용본거지로 등록한 리스차량에 관한 취득세 경정거부 부분에 대한 재조사 결정을 하였으며, ③ 피고 [redacted]구청장의 경정거부 취소 심판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리스차량 중 인천 서구를 사용본거지로 등록한 리스차량에 관한 취득세 경정거부 부분에 대한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4. 9. 29. 피고 [redacted]구청장의 이 사건 리스차량에 관한 별지 처분 목록 기재 각 취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과 피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6

[redacted]시장, 피고 [redacted]구청장, 피고 [redacted]구청장의 이 사건 리스차량에 관한 별지 취득세 납부 내역 기재 취득세에 대한 각 경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각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호증, 을가 제4, 11, 12, 13호증, 을나 제3 내지 6, 10, 11호증, 을라 제2호증, 을바 제5호증(각 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과 이 사건 각 경정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관하여

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지방세법상 납세지는 납세의무 이행을 위한 지역적 관할을 의미하고, 자동차관리법상 사용본거지는 차량에 관한 사법상 권리관계 및 행정적인 관리·규제 또는 공시의 기준이 되므로 모두 획일적·일의적으로 장소적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는 점, 자동차등록령의 개정으로 2010. 12. 1.부터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등록관청에서도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자 차량 취득세의 납세지에 관하여 규정한 지방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 단서가 신설되었는데, '등록지'와 '사용본거지'가 달라지는 상황은 차량이 사용본거지가 아닌 곳에 등록되는 경우에만 발생할 수 있는 점, 자동차관리법령의 입법 목적은 차량에 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공적 관리에 있고 소유자가 차량을 실제로 보관·관리·이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자동차관리법령의 규제 대상이 아닌 점, 사용본거지에 대한 정의가 최초로 규정된 구 자동차등록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사용본거지'라 함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6

'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주된 사용지로서 자동차관리에 관한 각종 통지가 도달될 수 있는 일정한 주소지'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 리스차량의 사용본거지를 판단함에 있어 '자동차관리에 관한 각종 통지가 도달될 수 있는 일정한 주소지'라는 개념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가축전염병예방법, 민사집행규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사용본거지'를 차용하고 있는 다른 법령에서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사용본거지'를 등록·신고·보고 및 문서 제출의무의 기준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하에서 취득세의 납세지는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제105조 제1항), 자동차등록세의 납세지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지'(제125조 제2호의2)이었다가 2010. 3. 31. 지방세법 전면개정으로 소유권 취득에 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면서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은 통합 취득세의 납세지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라고 규정하여 2010. 3. 31. 전면개정 전 지방세법상 등록세의 납세지 규정을 승계하였는데, 전면개정 전 지방세법 하에서 등록세의 납세지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등록지'로 해석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승계한 지방세법상 차량 취득세의 납세지에 관한 규정도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차량 등록면허세의 경우 차량 취득세와 납세지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차량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인 '등록'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공부상 기재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고, 차량 취득세의 경우도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서울특별시가 차량 등록면허세의 경우 이 사건과 같은 과세를 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 시설대여(리스)업은 본질적으로 금융업에 해당하고 리스차량의 구매·인수·등록 등 사무를 리스이용자가 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6

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리스차량의 보관·관리·이용에 따른 경제적 이익과 법적 책임이 리스이용자에게 전적으로 귀속됨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상 리스차량의 취득세 납부의무는 형식상 소유자인 시설대여업자가 부담하고 있으므로, 차량 취득세의 납세지인 '사용본거지'도 형식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리스차량의 실제 소재지 내지 사용지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리스이용자가 리스차량을 보관·관리·이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차량 취득세의 납세지를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된 사용본거지'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리스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관리법령상 신청요건을 모두 갖추어 '사용본거지' 등록이 적법하게 마쳐진 이상, 이러한 자동차 등록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하여 다투어지거나 당사자의 경정 신청, 사용본거지 관할 등록관청의 직권 경정이 없었음에도 피고 강남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자동차등록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리스차량의 사용본거지 등록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리스차량의 '등록된 사용본거지'나 소재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피고 강남구청장에게는 이 사건 리스차량에 관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고, 원고가 이미 이 사건 리스차량에 관한 취득세를 유효하게 납부하였음에도 다시 납세의무를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2) 설령 차량 취득세의 납세지인 '사용본거지'를 '실제로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이용하는 곳'이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지점은 가공의 사업장이 아니다.

(3) 설령 이 사건 각 지점이 가공의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강남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소재한 원고의 본점에서 이 사건 리스차량이 이용, 보관, 관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6

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리스차량의 취득 당시 이 사건 리스차량이 [redacted]시에 소재한 것도 아니며, 리스차량 이용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redacted]시에서 이용되는 리스차량은 소수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과세요건을 결여하였다.

나) 설령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취득세 본세 부분이 적법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총액만 기재되어 있고,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

(2) [redacted]시와 피고[redacted]시장, [redacted]구청장, [redacted]구청장 소속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 차량 취득세의 납세지에 관한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점, 지방세 주무관청인 행정안전부 장관(현 안전행정부장관)이 '등록된 사용본거지가 취득세의 납세지가 된다'는 취지의 지방세 과세권 귀속 결정을 한 점, 원고는 위 지방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권유와 [redacted]시가 5년 이상 지방자치단체들의 취득세 세수확보 경쟁을 묵인한 것을 신뢰하여 위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차량 취득세를 납부한 점, 차량 취득세를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도 납부하지 아니한 것과 원고의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차량 취득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를 면제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각 경정거부처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취득세 본세 부분이 적법하다면, 이 사건 각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6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리스차량 취득세의 납세지인 '사용본거지'의 의미

가)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차량 취득세의 납세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이나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 한편, 구 자동차등록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등록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가 관할하나,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도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위 법령 규정을 종합하면, 원칙적으로 자동차의 등록지와 사용본거지가 동일하므로 일응 등록지를 차량 취득세의 납세지로 하되, 등록지는 사용본거지와 일치하는 때에만 차량 취득세의 납세지가 될 수 있고 등록지와 사용본거지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차량 취득세의 납세지로 하는 것이므로, 결국 차량 취득세의 납세지는 과세대상인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로 귀결된다.

나) 한편, 구 자동차등록령 제2조 제2호는 "'사용본거지'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구 자동차등록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은, "등록령 제2조 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란 ①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②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6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인 경우 그 법인 등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그런데 지방세법에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개념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은 자동차등록령 및 자동차등록규칙에 규정된 사용본거지를 차용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차량 취득세의 납세지를 정하려면 우선 자동차등록령 및 자동차등록규칙에 규정된 '사용본거지'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밝혀야 할 것이고, 아울러 2010. 12. 1.부터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에서도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2010. 12. 27. 개정된 구 지방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의 문언과 입법자의 의사, 차량 취득세 납부의무의 성립시기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이 소유자인 차량에 관한 취득세의 납세지인 '사용본거지'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사용본거지'가 아니라 '취득세 과세물건인 자동차의 소유자인 법인이 그 자동차를 사실상 취득할 당시 실제로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 내지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기로 예정한 곳으로서 당해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또는 차량의 보관·관리 또는 이용이 가능할 정도의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곳으로서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관청으로부터 인정받은 곳'이라고 보아야 한다.

(1) 사용본거지 정의 조항의 문언

사용본거지의 정의 조항인 구 자동차등록령 제2조 제2호와 구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 제1항은 문언상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거나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장소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6

(2) 사용본거지 정의 조항의 개정 경과

자동차등록령에 사용본거지의 정의 조항이 최초로 도입된 구 자동차등록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은 사용본거지를 '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주된 사용지로서 자동차관리에 관한 각종 통지가 도달될 수 있는 일정한 주소지'라고 규정하였고, 위 조항이 1994. 12. 23. 개정되었으나 '교통부령' 부분이 '건설교통부령'으로 바뀌었을 뿐 나머지 내용은 동일하다.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하위법규인 구 자동차등록규칙(1997. 1. 15. 부령 제8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은 "등록령 제2조 제2호에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주된 사용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다음 각호에 '1. 자동차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2. 자동차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라고 규정하였다.

한편, 자동차등록령이 1996. 10. 30. 전부개정되면서 구 자동차등록령(2005. 11. 30. 대통령령 제19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 제2호는 사용본거지를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일정한 장소'라고 규정하였고, 이 때부터 이 사건 리스차량 취득 당시 시행된 구 자동차등록령까지 '건설교통부령' 부분이 '국토해양부령'으로 개정되었을 뿐 나머지 내용은 동일하다.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하위법규인 구 자동차등록규칙(2008. 3. 14. 부령 제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은 "등록령 제2조 제2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일정한 장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다음 각호에 '1. 자동차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2. 자동차소유자가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인 경우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6

는 그 법인등의 주사무소 소재지'라고 규정하였고, 이 때부터 이 사건 리스차량 취득 당시 시행된 구 자동차등록규칙까지 '건설교통부령' 부분이 '국토해양부령'으로 개정되었을 뿐 나머지 내용은 동일하다.

이러한 개정 경과에 의하면, 자동차등록령에서 정한 '사용본거지'는 지속적으로 '자동차의 주된 사용' 또는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이라는 실질적 요소를 요건으로 하여 왔고, '자동차관리에 관한 각종 통지가 도달될 수 있는 일정한 주소지'라는 형식적 요건은 삭제되었으며, '주된 사용'에서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으로 용어가 구체화되었다. 한편, 입법자는 자동차가 이동성이 강한 동산이어서 실제로 사용 내지 보관·관리 또는 이용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하나로 확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된' 또는 '주로'라는 요건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3) 구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다른 장소를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으려면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서 '그 사유'라 함은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장소에서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한다는 점'을 의미하는데,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사용본거지'로서 단지 자동차의 공적 관리·규제 등을 위한 형식적 준거지에 불과하다면 구 자동차등록규칙이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특정한 장소를 단순히 신고하는 것에서 나아가 위와 같은 사유의 증명까지 요구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에 의하면, 자동차 소유자인 법인이 비사업용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관청에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하 '사용본거지확인정보'라 한다)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6

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 내지 4항, 제8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 6. 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서식 제73호에 의하면,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신청사유,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기타 참고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 서식에는 사업장의 소유 여부, 면적, 임대차(전세)계약에 관한 사항과 종업원수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법령 규정을 종합하면, 구 자동차등록규칙이 사용본거지확인정보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요구하는 것은 위 서류들을 통하여 그 장소가 자동차의 보관·관리 또는 이용에 필요한 인적·물적 설비로 적정 수의 종업원과 적절한 사업 공간 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4) 구 지방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문언 및 입법자의 의사

구 지방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는 차량 취득세의 납세지를 단순히 '사용본거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민사집행규칙 제109조 제1항 본문(자동차집행의 집행법원은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10조(자동차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서에는 법 제80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을 붙여야 한다)의 문언과 대비된다. 입법자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사용본거지'를 차량 취득세의 납세지로 정할 의사로 구 지방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 단서를 신설한 것이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6

면, 민사집행규칙에서와 같은 법문을 사용할 것이지 단순히 '사용본거지'라고 규정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5) 차량 취득세 납부의무의 성립시기와의 관계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차량의 소유자(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자동차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생긴다)를 취득자로 하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차량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와 같이 차량을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가 부과되며,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에 의하면, 재산권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차량 취득세의 납부 의무는 차량을 등록하기 전 차량의 등록과는 무관하게 차량을 사실상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실제 차량 등록 및 취득세 납부 절차도 '등록서류준비 → 서류검토 → 취득세 고지서 발급 및 납부 → 채권구매 → 인지구입 → 증지구입 → 신규등록관련 서류 제출 → 자동차등록(전산입력)' 순으로 이루어지므로, 차량의 등록보다 취득세 납부가 선행한다]. 차량을 취득한 자가 취득세 납부 의무를 이행하려면 차량이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기 전에 납세지 및 납세지에 따른 과세주체가 결정되어야 하므로, 차량 취득세 납세지로서의 '사용본거지'는 차량의 사실상 취득 당시 존재하는 개념이고, 따라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될 것을 전제하지 아니한다.

라) 나아가 구 자동차등록령 제2조 제2항은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주체를 '자동차의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고 리스차량의 경우 리스이용자를 기준으로 한다는 특칙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구 지방세법 제7조 제9항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로서 대여시설이용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6

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그 차량은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리스차량의 납세지인 리스차량의 사용본거지는 리스차량의 소유자인 시설대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자동차 시설대여(리스)업자가 리스이용자에게 자동차를 리스한 경우, 리스이용자가 리스차량을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나, 자동차 시설대여(리스)업자도 리스차량의 보관·사용 등에 관하여 리스이용자의 리스계약 준수 여부 점검, 리스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리스차량의 소유자로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자동차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자동차 시설대여업자와 리스이용자 사이에서는 최종적으로 리스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한다), 자동차세·과태료 등 제세공과금의 납부 통지서 수령 및 납부(손해배상의 경우와 같이 리스이용자가 최종적으로 비용을 부담한다), 리스이용자의 리스료 미납시 차량의 회수, 리스 종료 후 차량의 인수 등의 사무를 수행함으로써 리스차량을 관리한다.

따라서 이 사건 리스차량에 관한 취득세의 납세지가 되는 사용본거지는 '이 사건 리스차량의 소유자인 원고가 이 사건 리스차량의 취득 당시 위와 같이 이 사건 리스차량을 관리하는 곳 내지 관리하기로 예정한 곳으로서 당해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 사건 리스차량의 취득 당시 이 사건 리스차량에 대한 관리가 가능할 정도의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곳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관청으로부터 인정받은 곳'이어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과 이 사건 리스차량에 관한 등록의 효력과의 관계

앞서 본 바와 같이 차량 취득세의 납세지인 사용본거지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사용본거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차량 취득세의 납세지 및 과세권자를 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6

하는 것과 자동차등록의 효력은 무관하다. 따라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사용본거지의 효력을 부인하지 아니하고도 과세물건인 차량을 실제로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이라는 실질적인 징표를 가지고 차량의 사용본거지를 판단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리스차량의 사용본거지 등록에 관한 불복 절차를 거쳤는지, 이 사건 리스차량의 사용본거지 등록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인지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이 사건 리스차량의 사용본거지가 어디인지에 따라 이 사건 리스차량에 관한 취득세의 납세지 및 과세권자를 결정하면 된다.

따라서 차량 취득세의 납세지인 사용본거지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사용본거지'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경정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 [redacted]시장, [redacted]구청장, [redacted]구청장은 이 사건 각 지점의 소재지로서 이 사건 리스차량에 관한 신규 등록 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이 사건 리스차량의 사용본거지로 등록된 ① [redacted]시 [redacted]구 A빌딩 [redacted]호 또는 [redacted]시 [redacted]구 [redacted]로 [redacted]([redacted]동, [redacted]사옥), ② [redacted]구 [redacted]로 [redacted] [redacted]층([redacted]동[redacted]가), ③ [redacted]구 [redacted]로 [redacted], [redacted]층([redacted]동)이 이 사건 리스차량의 사용본거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리스차량에 관하여 별지 취득세 납부 내역 기재와 같이 [redacted]시, [redacted]구, [redacted]구에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지점의 소재지가 이 사건 리스차량의 사용본거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각 지점에 관한 임대차계약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6

(가) 원고는 B로부터 2007. 5. 2.부터 2010. 7. 1.까지 '[redacted]시 [redacted]구 A빌딩 [redacted]호'를 임차하였고, 2011. 4. 29. 주식회사 [redacted]로부터 2011. 5. 1.부터 2012. 4. 30.까지 '[redacted]시 [redacted]구 [redacted]동 [redacted]주식회사 [redacted]사옥 [redacted]층 일부'를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1. 9. 23. 주식회사 [redacted]로부터 2011. 8. 18.부터 2012. 8. 17.까지 '[redacted]구 [redacted]동[redacted]가 [redacted] 주식회사 [redacted]사옥 1층 일부'를 임차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 25. 주식회사 [redacted]로부터 2011. 2. 1.부터 2012. 1. 31.까지 '[redacted]동 [redacted] 주식회사 [redacted]사옥 [redacted]층 일부'를 임차하였고, 2012. 1. 31. 같은 임대인으로부터 2012 2. 1.부터 2013. 1. 31.까지 같은 건물을 임차하였으나, 2012. 6. 22. 주식회사 [redacted]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각 지점의 사업자등록 현황

(가) 원고는 2007. 5. 2.을 개업일로 하여 [redacted] 지점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2011. 5. 3. [redacted]시 [redacted]구 [redacted]동 [redacted]로 사업장소재지를 변경하였으며, 2012. 4. 30.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0. 8. 20.을 개업일로 하여 [redacted] 지점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가 2012. 7. 2. 폐업하였다.

(다) 원고는 2011. 2. 1.을 개업일로 하여 [redacted] 지점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가 2012. 7. 2. 폐업하였다.

(3) 이 사건 각 지점 소재지의 상태

(가) 2012. 5. 15.경 원고의 [redacted] 지점 소재지인 [redacted]동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6

주식회사 [redacted]사옥 입구에 원고의 [redacted] 지점을 가리키는 안내판이 없었고, 원고가 주식회사 [redacted]로부터 임차한 사무실 주변에 원고의 [redacted]지점을 가리키는 현판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2. 5. 17.경 원고의 [redacted] 지점 소재지인 [redacted]구 [redacted]동[redacted]가 [redacted] 주식회사 [redacted]사옥 건물 입구에 원고의 [redacted] 지점을 가리키는 안내판이 없었다.

(4) 원고는 2010년도 및 2011년도([redacted] 지점은 2011년도 지방소득세와만 관련이 있다)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때, 이 사건 각 지점의 종업원수를 '0'명으로 신고하였고, 이 사건 각 지점의 건축물 연면적만을 기준으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본점과 지점 간 안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5 내지 8, 11 내지 18, 24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호증의 2, 을나 제7호증의 1, 을나 제9, 10, 11호증, 을다 제3호증의 1, 2, 을라 제2호증, 을마 제2 내지 6호증, 을바 제7 내지 13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6 내지 9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7호증의 2, 을나 제8호증의 1, 2, 3, 을다 제1호증의 1 내지 4, 을다 제2호증, 을마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원고, 피고 [redacted]시장, [redacted]구청장, [redacted]구청장, 피고 [redacted]구청장의 보조참가인 [redacted]광역시장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지점이 이 사건 리스차량의 관리가 가능할 정도의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춘 사용본거지라고 인정하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6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각 지점은 오히려 가공의 사업장인 것으로 보인다.

(1) 2011년부터 이 사건 각 지점의 폐업일까지 이 사건 각 지점에는 원고의 직원이 한 명도 근무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원고의 법인등기부에 부산 지점은 지점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이 사건 각 지점은 폐업 전에도 지점으로 등기되지 아니하였다.

(3) 원고는 2010. 7. 2.부터 2011. 4. 30.까지 [redacted] 지점의 사무실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redacted]시를 사용본거지로 하여 리스차량을 등록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4) 원고는 2011. 4. 22.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2013. 1. 1.부터 3. 31.까지의 것)를 하면서 당시 주식회사 [redacted]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신고서에 '[redacted]시 [redacted]구 [redacted]동 [redacted] [redacted]사옥'을 사업장주소로 기재하였다.

(5) 2011년 이후 이 사건 각 지점의 사무실이 설치되었는지, 사무실 내부에 집기 등의 설비가 물적 시설이 있었는지도 의심스럽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지점의 소재지는 이 사건 리스차량의 사용본거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리스차량에 관한 취득세의 납세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잘못된 납세지를 기준으로 [redacted]시, [redacted]구, [redacted]구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행위는 효력이 없고, 원고가 잘못 신고·납부한 이 사건 리스차량에 관한 취득세는 구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법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6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 해당하여 경정의 대상이 되며, 원고가 별지 취득세 납부 내역 기재와 같이 신고·납부한 취득세는 모두 원고에게 환급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 [redacted]시장, [redacted]구청장, [redacted]구청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경정거부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본세 부분의 적법 여부

가) 구 지방세법 제18조,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하는데,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취득세의 과세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할 수 있다. 한편, 지방세 관련법령에 취득세의 과세 주체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구 지방세법 제3조, 구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8조 등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취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도에게 취득세에 관한 과세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본세 부분은 구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징수처분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본세 부분이 과세 주체에 의한 적법한 처분이 되려면 원고의 주사무소인 본점 소재지가 이 사건 리스차량의 사용본거지에 해당하여 이 사건 리스차량에 관한 취득세의 납세지가 [redacted]시[1]이어야 한다. 아래에서 원고의 본점 소재지인 '[redacted]시 [redacted]구 [redacted]로 [redacted], [redacted]층([redacted]동, [redacted]타워)'

1) 구 지방세기본법 제4조, 제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취득세는 특별시세이므로, 차량의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경우 취득세의 납세지는 서울특별시가 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6

가 이 사건 리스차량의 사용본거지인지에 관하여 본다.

다) 을가 제19, 20, 2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주사무소인 본점은 6개 부(기업금융1본부, 기업금융2본부, 투자금융본부, 시너지재무본부, 경영전략본부, RM본부이다)로 구성되고, 기업금융2본부 산하에 Auto금융팀이 있으며 그 구성원은 12명인 사실, Auto 금융팀은 차량의 리스할부금융 등과 관련한 영업전반 업무, 보험 관련, 자동차세·과태료 납부, 차량사고 처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바와 같이 차량 시설대여계약의 성격상 리스차량 소유자인 리스회사의 리스차량에 대한 이용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점, 이 사건 각 지점이 가공의 사업장인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의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1차적으로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차량의 사용본거지로 보고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으려면 그 사유를 증명할 서류를 등록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구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 체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본점 소재지가 원고의 주사무소 소재지로서 이 사건 리스차량의 취득 당시 실제로 이 사건 리스차량을 주로 관리하는 곳 내지 이러한 관리가 예정된 곳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본점 소재지인 '[redacted]시 [redacted]구 [redacted]로 [redacted], [redacted]층([redacted]동, [redacted]타워)'가 이 사건 리스차량의 사용본거지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리스차량에 관한 취득세의 납세지는 [redacted]시라고 보아야 한다.

라) 피고 [redacted]구청장은 이 사건 리스차량에 관한 취득세의 과세권자인 [redacted]시장으로부터 구 지방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제6조, [redacted]시 시세기본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리스차량에 관한 부과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6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본세 부분은 적법하다.

5)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적법 여부

가)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다.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면서, 납세고지서에 산출근거는 물론 종류조차도 따로 밝히지 않고 단지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하고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세법 규정을 잘 살펴보면 무슨 가산세가 부과된 것이고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그 기재의 흠결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납세고지에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더라도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이미 모두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의 하자는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redacted]구청장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에 관하여 그 세액만을 기재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redacted]구청장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는 가산세의 종류 및 산출근거 등을 제시하지 아니한 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6

차적 하자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redacted]구청장 및 그 보조참가인 [redacted]시장은, 원고에게 세무조사 시부터 정보공개 등의 방법으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내용을 알려주어 불복신청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었으므로 가산세 고지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주장한다.

원고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회신 내역에 2007. 9.부터 2012. 6.까지 등록된 원고 소유 차량 중 지점별·연도별 등록건수, 취득가액 합계액, 취득세 본세의 합계액, 취득세 본세의 세율 등만 기재되어 있을 뿐 가산세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을가 제24호증으로 제출된 '자동차리스사(캐피탈사) 세무조사 결과통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에 따른 자동차리스사 차량취득세 추징' 등의 문서가 원고에게 교부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위 문서들의 내용을 보더라도 원고가 취득한 자동차별로 가산세의 종류별 가산세액 및 산출근거가 나타나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redacted]구청장 및 그 보조참가인 [redacted]시장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관한 납세고지의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redacted]구청장 및 그 보조참가인 [redacted]시장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납세고지의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redacted]시장,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에 대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6

청구와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에 대한 청구 중 각 가산세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호제훈

판사 서정희

판사 이민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6

별지

처분 목록

(단위:원)

처분일	취득일	과세표준	산출세액	가산세	고지세액
2012. 9. 10.	2011-01-04	76,272,727	5,339,090	2,052,870	7,391,960
2012. 9. 10.	2011-01-05	90,490,909	6,334,360	2,433,650	8,768,010
2012. 9. 10.	2011-01-12	53,636,364	3,754,540	1,434,600	5,189,140
2012. 9. 10.	2011-01-13	53,636,364	3,754,540	1,433,470	5,188,010
2012. 9. 10.	2011-01-13	83,572,727	5,850,090	2,233,550	8,083,640
2012. 9. 10.	2011-01-14	48,636,363	3,404,540	1,298,820	4,703,360
2012. 9. 10.	2011-01-20	29,000,000	2,030,000	770,790	2,800,790
2012. 9. 10.	2011-01-20	31,818,182	2,227,270	845,690	3,072,960
2012. 9. 10.	2011-01-21	32,640,000	2,284,800	866,850	3,151,650
2012. 9. 10.	2011-01-24	54,027,273	3,781,900	1,431,440	5,213,340
2012. 9. 10.	2011-01-24	54,027,273	3,781,900	1,431,440	5,213,340
2012. 9. 10.	2011-01-24	54,027,273	3,781,900	1,431,440	5,213,340
2012. 9. 10.	2011-01-27	110,909,091	7,763,630	2,931,540	10,695,170
2012. 9. 10.	2011-01-28	30,818,182	2,157,270	813,930	2,971,200
2012. 9. 10.	2011-01-31	45,454,545	3,181,810	1,197,630	4,379,440
2012. 9. 10.	2011-02-10	51,000,000	3,570,000	1,333,030	4,903,030
2012. 9. 10.	2011-02-15	38,090,910	2,666,360	991,610	3,657,970
2012. 9. 10.	2011-02-15	48,971,364	3,427,990	1,274,860	4,702,850
2012. 9. 10.	2011-02-16	52,272,727	3,659,090	1,359,700	5,018,79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6

2012. 9. 10.	2011-02-18	35,363,636	2,475,450	918,390	3,393,840
2012. 9. 10.	2011-02-18	39,363,636	2,755,450	1,022,270	3,777,720
2012. 9. 10.	2011-02-18	58,363,636	4,085,450	1,515,700	5,601,150
2012. 9. 10.	2011-02-21	112,727,273	7,890,900	2,920,420	10,811,320
2012. 9. 10.	2011-02-22	35,363,637	2,475,450	915,420	3,390,870
2012. 9. 10.	2011-02-22	38,636,364	2,704,540	1,000,130	3,704,670
2012. 9. 10.	2011-02-25	30,818,182	2,157,270	795,810	2,953,080
2012. 9. 10.	2011-02-25	30,818,182	2,157,270	795,810	2,953,080
2012. 9. 10.	2011-03-03	40,909,091	2,863,630	1,051,230	3,914,860
2012. 9. 10.	2011-03-04	35,498,637	2,484,900	911,460	3,396,360
2012. 9. 10.	2011-03-04	36,363,637	2,545,450	933,670	3,479,120
2012. 9. 10.	2011-03-08	35,363,637	2,475,450	905,020	3,380,470
2012. 9. 10.	2011-03-10	24,862,273	1,740,350	635,220	2,375,570
2012. 9. 10.	2011-03-17	35,363,636	2,475,450	898,340	3,373,790
2012. 9. 10.	2011-03-17	30,351,818	2,124,620	771,020	2,895,640
2012. 9. 10.	2011-03-17	34,090,910	2,386,360	866,000	3,252,360
2012. 9. 10.	2011-03-18	24,070,000	1,684,900	610,940	2,295,840
2012. 9. 10.	2011-03-18	26,350,000	1,844,500	668,810	2,513,310
2012. 9. 10.	2011-03-18	20,213,636	1,414,950	513,060	1,928,010
2012. 9. 10.	2011-03-18	26,545,454	1,858,180	673,770	2,531,950
2012. 9. 10.	2011-03-22	43,902,728	3,073,190	1,110,640	4,183,830
2012. 9. 10.	2011-03-23	29,000,000	2,030,000	733,030	2,763,03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6

2012. 9. 10.	2011-03-23	29,000,000	2,030,000	733,030	2,763,030
2012. 9. 10.	2011-03-23	51,954,545	3,636,810	1,313,250	4,950,060
2012. 9. 10.	2011-03-25	40,727,273	2,850,900	1,027,740	3,878,640
2012. 9. 10.	2011-03-25	41,181,818	2,882,720	1,039,210	3,921,930
2012. 9. 10.	2011-03-28	53,454,545	3,741,810	1,345,550	5,087,360
2012. 9. 10.	2011-03-31	39,739,748	2,781,780	997,810	3,779,590
2012. 9. 10.	2011-03-31	30,424,197	2,129,690	763,910	2,893,600
2012. 9. 10.	2011-03-31	36,818,182	2,577,270	924,460	3,501,730
2012. 9. 10.	2011-03-31	36,818,182	2,577,270	924,460	3,501,730
2012. 9. 10.	2011-03-31	36,818,182	2,577,270	924,460	3,501,730
2012. 9. 10.	2011-03-31	36,818,182	2,577,270	924,460	3,501,730
2012. 9. 10.	2011-03-31	36,818,182	2,577,270	924,460	3,501,730
2012. 9. 10.	2011-03-31	36,818,182	2,577,270	924,460	3,501,730
2012. 9. 10.	2011-03-31	32,550,466	2,278,530	817,300	3,095,830
2012. 9. 10.	2011-03-31	36,818,182	2,577,270	924,460	3,501,730
2012. 9. 10.	2011-03-31	36,818,182	2,577,270	924,460	3,501,730
2012. 9. 10.	2011-03-31	32,577,395	2,280,410	817,980	3,098,390
2012. 9. 10.	2011-03-31	36,818,182	2,577,270	924,460	3,501,730
2012. 9. 10.	2011-03-31	36,818,182	2,577,270	924,460	3,501,730
2012. 9. 10.	2011-03-31	36,818,182	2,577,270	924,460	3,501,730
2012. 9. 10.	2011-03-31	36,818,182	2,577,270	924,460	3,501,73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6

2012. 9. 10.	2011-03-31	36,818,182	2,577,270	924,460	3,501,730
2012. 9. 10.	2011-03-31	36,818,182	2,577,270	924,460	3,501,730
2012. 9. 10.	2011-03-31	36,818,182	2,577,270	924,460	3,501,730
2012. 9. 10.	2011-03-31	32,577,395	2,280,410	817,980	3,098,390
2012. 9. 10.	2011-03-31	36,818,182	2,577,270	924,460	3,501,730
2012. 9. 10.	2011-03-31	36,818,182	2,577,270	924,460	3,501,730
2012. 9. 10.	2011-03-31	36,818,182	2,577,270	924,460	3,501,730
2012. 9. 10.	2011-03-31	36,818,182	2,577,270	924,460	3,501,730
2012. 9. 10.	2011-03-31	36,818,182	2,577,270	924,460	3,501,730
2012. 9. 10.	2011-03-31	36,818,182	2,577,270	924,460	3,501,730
2012. 9. 10.	2011-03-31	36,818,182	2,577,270	924,460	3,501,730
2012. 9. 10.	2011-03-31	36,818,182	2,577,270	924,460	3,501,730
2012. 9. 10.	2011-03-31	36,818,182	2,577,270	924,460	3,501,730
2012. 9. 10.	2011-03-31	36,818,182	2,577,270	924,460	3,501,730
2012. 9. 10.	2011-03-31	36,818,182	2,577,270	924,460	3,501,730
2012. 9. 10.	2011-03-31	36,818,182	2,577,270	924,460	3,501,730
2012. 9. 10.	2011-03-31	36,818,182	2,577,270	924,460	3,501,730
2012. 9. 10.	2011-03-31	36,818,182	2,577,270	924,460	3,501,730
2012. 9. 10.	2011-03-31	36,818,182	2,577,270	924,460	3,501,730
2012. 9. 10.	2011-03-31	36,818,182	2,577,270	924,460	3,501,730
2012. 9. 10.	2011-03-31	36,818,182	2,577,270	924,460	3,501,730
2012. 9. 10.	2011-03-31	36,818,182	2,577,270	924,460	3,501,730
2012. 9. 10.	2011-03-31	36,818,182	2,577,270	924,460	3,501,73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6

2012. 9. 10.	2011-03-31	36,818,182	2,577,270	924,460	3,501,730
2012. 9. 10.	2011-03-31	36,818,182	2,577,270	924,460	3,501,730
2012. 9. 10.	2011-03-31	26,025,019	1,821,750	653,460	2,475,210
2012. 9. 10.	2011-03-31	26,025,019	1,821,750	653,460	2,475,210
2012. 9. 10.	2011-03-31	26,025,019	1,821,750	653,460	2,475,210
2012. 9. 10.	2011-03-31	27,944,268	1,956,090	701,640	2,657,730
2012. 9. 10.	2011-03-31	27,944,268	1,956,090	701,640	2,657,730
2012. 9. 10.	2011-03-31	27,944,268	1,956,090	701,640	2,657,730
2012. 9. 10.	2011-03-31	27,944,268	1,956,090	701,640	2,657,730
2012. 9. 10.	2011-03-31	27,944,268	1,956,090	701,640	2,657,730
2012. 9. 10.	2011-03-31	36,818,182	2,577,270	924,460	3,501,730
2012. 9. 10.	2011-03-31	27,944,268	1,956,090	701,640	2,657,730
2012. 9. 10.	2011-03-31	27,944,268	1,956,090	701,640	2,657,730
2012. 9. 10.	2011-03-31	27,944,268	1,956,090	701,640	2,657,730
2012. 9. 10.	2011-03-31	36,818,182	2,577,270	924,460	3,501,730
2012. 9. 10.	2011-03-31	27,944,268	1,956,090	701,640	2,657,730
2012. 9. 10.	2011-03-31	27,944,268	1,956,090	701,640	2,657,730
2012. 9. 10.	2011-03-31	27,944,268	1,956,090	701,640	2,657,730
2012. 9. 10.	2011-03-31	36,818,182	2,577,270	924,460	3,501,730
2012. 9. 10.	2011-03-31	36,818,182	2,577,270	924,460	3,501,730
2012. 9. 10.	2011-03-31	36,818,182	2,577,270	924,460	3,501,73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6

2012. 9. 10.	2011-03-31	36,818,182	2,577,270	924,460	3,501,730
2012. 9. 10.	2011-03-31	36,818,182	2,577,270	924,460	3,501,730
2012. 9. 10.	2011-03-31	36,818,182	2,577,270	924,460	3,501,730
2012. 9. 10.	2011-03-31	36,818,182	2,577,270	924,460	3,501,730
2012. 9. 10.	2011-03-31	36,818,182	2,577,270	924,460	3,501,730
2012. 9. 10.	2011-03-31	36,818,182	2,577,270	924,460	3,501,730
2012. 9. 10.	2011-03-31	36,818,182	2,577,270	924,460	3,501,730
2012. 9. 10.	2011-03-31	36,818,182	2,577,270	924,460	3,501,730
2012. 9. 10.	2011-03-31	36,818,182	2,577,270	924,460	3,501,730
2012. 9. 10.	2011-03-31	36,818,182	2,577,270	924,460	3,501,730
2012. 9. 10.	2011-03-31	36,818,182	2,577,270	924,460	3,501,730
2012. 9. 10.	2011-03-31	36,818,182	2,577,270	924,460	3,501,730
2012. 9. 10.	2011-03-31	36,818,182	2,577,270	924,460	3,501,730
2012. 9. 10.	2011-03-31	36,818,182	2,577,270	924,460	3,501,730
2012. 9. 10.	2011-03-31	36,818,182	2,577,270	924,460	3,501,730
2012. 9. 10.	2011-03-31	36,818,182	2,577,270	924,460	3,501,730
2012. 9. 10.	2011-03-31	36,818,182	2,577,270	924,460	3,501,730
2012. 9. 10.	2011-03-31	36,818,182	2,577,270	924,460	3,501,730
2012. 9. 10.	2011-03-31	36,818,182	2,577,270	924,460	3,501,730
2012. 9. 10.	2011-03-31	36,818,182	2,577,270	924,460	3,501,730
2012. 9. 10.	2011-03-31	36,818,182	2,577,270	924,460	3,501,730
2012. 9. 10.	2011-03-31	32,550,466	2,278,530	817,300	3,095,830
2012. 9. 10.	2011-03-31	36,818,182	2,577,270	924,460	3,501,73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6

2012. 9. 10.	2011-03-31	36,818,182	2,577,270	924,460	3,501,730
2012. 9. 10.	2011-03-31	36,818,182	2,577,270	924,460	3,501,730
2012. 9. 10.	2011-03-31	36,818,182	2,577,270	924,460	3,501,730
2012. 9. 10.	2011-03-31	36,818,182	2,577,270	924,460	3,501,730
2012. 9. 10.	2011-04-05	39,270,000	2,748,900	981,900	3,730,800
2012. 9. 10.	2011-04-06	33,371,364	2,335,990	833,700	3,169,690
2012. 9. 10.	2011-04-06	24,862,273	1,740,350	621,130	2,361,480
2012. 9. 10.	2011-04-08	29,000,000	2,030,000	723,280	2,753,280
2012. 9. 10.	2011-04-13	35,363,637	2,475,450	878,280	3,353,730
2012. 9. 10.	2011-04-14	23,545,455	1,648,180	584,270	2,232,450
2012. 9. 10.	2011-04-14	38,181,819	2,672,720	947,470	3,620,190
2012. 9. 10.	2011-04-15	30,818,182	2,157,270	764,100	2,921,370
2012. 9. 10.	2011-04-21	38,090,000	2,666,300	939,600	3,605,900
2012. 9. 10.	2011-04-22	22,000,000	1,540,000	542,230	2,082,230
2012. 9. 10.	2011-04-27	29,000,000	2,030,000	711,710	2,741,710
2012. 9. 10.	2011-04-29	24,070,000	1,684,900	589,710	2,274,610
2012. 9. 10.	2011-04-29	25,579,091	1,790,530	626,670	2,417,200
2012. 9. 10.	2011-04-29	29,351,818	2,054,620	719,110	2,773,730
2012. 9. 10.	2011-04-29	26,350,000	1,844,500	645,570	2,490,070
2012. 9. 10.	2011-04-29	20,013,636	1,400,950	490,330	1,891,280
2012. 9. 10.	2011-04-29	32,370,000	2,265,900	793,060	3,058,96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6

2012. 9. 10.	2011-04-29	42,179,091	2,952,530	1,033,370	3,985,900
2012. 9. 10.	2011-05-03	38,181,819	2,672,720	932,240	3,604,960
2012. 9. 10.	2011-05-06	30,818,182	2,157,270	750,510	2,907,780
2012. 9. 10.	2011-05-16	150,818,181	10,557,270	3,641,190	14,198,460
2012. 9. 10.	2011-05-17	59,909,091	4,193,630	1,445,110	5,638,740
2012. 9. 10.	2011-05-24	135,454,545	9,481,810	3,247,510	12,729,320
2012. 9. 10.	2011-05-26	29,909,091	2,093,630	715,800	2,809,430
2012. 9. 10.	2011-05-31	22,064,181	1,544,490	525,730	2,070,220
2012. 9. 10.	2011-05-31	22,064,181	1,544,490	525,730	2,070,220
2012. 9. 10.	2011-05-31	22,064,181	1,544,490	525,730	2,070,220
2012. 9. 10.	2011-05-31	35,690,000	2,498,300	850,420	3,348,720
2012. 9. 10.	2011-06-01	51,454,545	3,601,810	1,224,970	4,826,780
2012. 9. 10.	2011-06-03	39,000,000	2,730,000	926,830	3,656,830
2012. 9. 10.	2011-06-13	32,370,000	2,265,900	762,470	3,028,370
2012. 9. 10.	2011-06-13	32,370,000	2,265,900	762,470	3,028,370
2012. 9. 10.	2011-06-15	32,370,000	2,265,900	761,110	3,027,010
2012. 9. 10.	2011-06-15	55,182,727	3,862,790	1,297,500	5,160,290
2012. 9. 10.	2011-06-16	30,818,181	2,157,270	723,970	2,881,240
2012. 9. 10.	2011-06-16	30,818,182	2,157,270	723,970	2,881,240
2012. 9. 10.	2011-06-17	39,909,091	2,793,630	936,690	3,730,320
2012. 9. 10.	2011-06-17	39,909,091	2,793,630	936,690	3,730,320
2012. 9. 10.	2011-06-21	47,727,273	3,340,900	1,116,190	4,457,09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6

2012. 9. 10.	2011-06-24	43,000,000	3,010,000	1,002,930	4,012,930
2012. 9. 10.	2011-06-24	21,827,273	1,527,900	509,090	2,036,990
2012. 9. 10.	2011-06-27	39,363,636	2,755,450	915,630	3,671,080
2012. 9. 10.	2011-06-30	35,363,636	2,475,450	820,360	3,295,810
2012. 9. 10.	2011-06-30	22,620,000	1,583,400	524,730	2,108,130
2012. 9. 10.	2011-07-01	36,363,637	2,545,450	842,790	3,388,240
2012. 9. 10.	2011-07-05	29,909,091	2,093,630	690,680	2,784,310
2012. 9. 10.	2011-07-06	28,545,455	1,998,180	658,590	2,656,770
2012. 9. 10.	2011-07-08	29,351,818	2,054,620	675,960	2,730,580
2012. 9. 10.	2011-07-13	39,909,091	2,793,630	914,900	3,708,530
2012. 9. 10.	2011-07-13	24,432,728	1,710,290	560,110	2,270,400
2012. 9. 10.	2011-07-27	36,363,637	2,545,450	822,940	3,368,390
2012. 9. 10.	2011-07-28	36,499,680	2,554,970	825,250	3,380,220
2012. 9. 10.	2011-07-28	36,499,680	2,554,970	825,250	3,380,220
2012. 9. 10.	2011-07-28	36,499,680	2,554,970	825,250	3,380,220
2012. 9. 10.	2011-07-28	36,499,680	2,554,970	825,250	3,380,220
2012. 9. 10.	2011-07-28	36,499,680	2,554,970	825,250	3,380,220
2012. 9. 10.	2011-07-29	41,455,000	2,901,850	936,420	3,838,270
2012. 9. 10.	2011-07-29	40,909,091	2,863,630	924,080	3,787,710
2012. 9. 10.	2011-07-29	26,836,364	1,878,540	606,190	2,484,730
2012. 9. 10.	2011-07-29	39,909,090	2,793,630	901,490	3,695,12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6

2012. 9. 10.	2011-07-29	36,363,637	2,545,450	821,410	3,366,860
2012. 9. 10.	2011-07-29	46,844,090	3,279,080	1,058,150	4,337,230
2012. 9. 10.	2011-07-29	46,844,091	3,279,080	1,058,150	4,337,230
2012. 9. 10.	2011-07-29	25,956,364	1,816,940	586,310	2,403,250
2012. 9. 10.	2011-07-29	25,956,364	1,816,940	586,310	2,403,250
2012. 9. 10.	2011-07-29	25,643,637	1,795,050	579,260	2,374,310
2012. 9. 10.	2011-08-05	24,862,272	1,740,350	557,950	2,298,300
2012. 9. 10.	2011-08-09	46,844,091	3,279,080	1,047,330	4,326,410
2012. 9. 10.	2011-08-11	55,272,727	3,869,090	1,233,450	5,102,540
2012. 9. 10.	2011-08-11	46,818,182	3,277,270	1,044,780	4,322,050
2012. 9. 10.	2011-08-19	35,363,637	2,475,450	783,230	3,258,680
2012. 9. 10.	2011-08-19	25,929,799	1,815,080	574,280	2,389,360
2012. 9. 10.	2011-08-19	25,929,799	1,815,080	574,280	2,389,360
2012. 9. 10.	2011-08-19	25,929,799	1,815,080	574,280	2,389,360
2012. 9. 10.	2011-08-19	25,929,799	1,815,080	574,280	2,389,360
2012. 9. 10.	2011-08-19	25,926,584	1,814,860	574,210	2,389,070
2012. 9. 10.	2011-08-19	25,929,799	1,815,080	574,280	2,389,360
2012. 9. 10.	2011-08-19	25,929,799	1,815,080	574,280	2,389,360
2012. 9. 10.	2011-08-19	25,929,799	1,815,080	574,280	2,389,360
2012. 9. 10.	2011-08-19	25,929,799	1,815,080	574,280	2,389,360
2012. 9. 10.	2011-08-19	31,000,000	2,170,000	686,580	2,856,580
2012. 9. 10.	2011-08-25	24,070,000	1,684,900	530,060	2,214,96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6

2012. 9. 10.	2011-08-25	24,070,000	1,684,900	530,060	2,214,960
2012. 9. 10.	2011-08-25	24,070,000	1,684,900	530,060	2,214,960
2012. 9. 10.	2011-08-25	24,070,000	1,684,900	530,060	2,214,960
2012. 9. 10.	2011-08-29	24,070,000	1,684,900	528,040	2,212,940
2012. 9. 10.	2011-08-30	46,283,636	3,239,850	1,014,390	4,254,240
2012. 9. 10.	2011-08-30	48,160,000	3,371,200	1,055,520	4,426,720
2012. 9. 10.	2011-08-31	24,070,000	1,684,900	527,030	2,211,930
2012. 9. 10.	2011-09-01	22,000,000	1,540,000	481,250	2,021,250
2012. 9. 10.	2011-09-02	46,727,273	3,270,900	1,021,170	4,292,070
2012. 9. 10.	2011-09-09	22,000,000	1,540,000	477,550	2,017,550
2012. 9. 10.	2011-09-20	29,000,000	2,030,000	622,800	2,652,800
2012. 9. 10.	2011-09-20	35,363,637	2,475,450	759,460	3,234,910
2012. 9. 10.	2011-09-22	23,610,960	1,652,760	506,070	2,158,830
2012. 9. 10.	2011-09-22	23,978,160	1,678,470	513,940	2,192,410
2012. 9. 10.	2011-09-22	23,610,960	1,652,760	506,070	2,158,830
2012. 9. 10.	2011-09-22	23,610,960	1,652,760	506,070	2,158,830
2012. 9. 10.	2011-09-22	23,610,960	1,652,760	506,070	2,158,830
2012. 9. 10.	2011-09-22	23,610,960	1,652,760	506,070	2,158,830
2012. 9. 10.	2011-09-22	23,610,960	1,652,760	506,070	2,158,830
2012. 9. 10.	2011-09-22	23,610,960	1,652,760	506,070	2,158,830
2012. 9. 10.	2011-09-22	23,610,960	1,652,760	506,070	2,158,83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6

2012. 9. 10.	2011-09-22	23,978,160	1,678,470	513,940	2,192,410
2012. 9. 10.	2011-09-22	23,610,960	1,652,760	506,070	2,158,830
2012. 9. 10.	2011-09-22	23,610,960	1,652,760	506,070	2,158,830
2012. 9. 10.	2011-09-22	187,363,636	13,115,450	4,015,950	17,131,400
2012. 9. 10.	2011-09-23	45,454,546	3,181,810	973,310	4,155,120
2012. 9. 10.	2011-09-23	34,909,091	2,443,630	747,500	3,191,130
2012. 9. 10.	2011-09-27	39,909,091	2,793,630	851,210	3,644,840
2012. 9. 10.	2011-09-27	29,000,000	2,030,000	618,540	2,648,540
2012. 9. 10.	2011-09-28	29,545,455	2,068,180	629,540	2,697,720
2012. 9. 10.	2011-09-29	29,545,455	2,068,180	628,920	2,697,100
2012. 9. 10.	2011-09-29	29,000,000	2,030,000	617,320	2,647,320
2012. 9. 10.	2011-09-29	51,000,000	3,570,000	1,085,630	4,655,630
2012. 9. 10.	2011-09-29	70,909,091	4,963,630	1,509,430	6,473,060
2012. 9. 10.	2011-09-29	70,909,091	4,963,630	1,509,430	6,473,060
2012. 9. 10.	2011-09-30	36,363,637	2,545,450	773,300	3,318,750
2012. 9. 10.	2011-09-30	29,545,455	2,068,180	628,300	2,696,480
2012. 9. 10.	2011-09-30	41,455,000	2,901,850	881,580	3,783,430
2012. 9. 10.	2011-09-30	30,106,364	2,107,440	640,230	2,747,670
2012. 9. 10.	2011-09-30	33,371,363	2,335,990	709,660	3,045,650
2012. 9. 10.	2011-10-04	28,818,182	2,017,270	610,420	2,627,690
2012. 9. 10.	2011-10-12	53,636,364	3,754,540	1,127,100	4,881,640
2012. 9. 10.	2011-10-19	29,545,455	2,068,180	616,510	2,684,69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6

2012. 9. 10.	2011-10-20	23,545,000	1,648,150	490,810	2,138,960
2012. 9. 10.	2011-10-21	35,909,091	2,513,630	747,790	3,261,420
2012. 9. 10.	2011-10-28	29,545,455	2,068,180	610,930	2,679,110
2012. 9. 10.	2011-10-28	44,545,455	3,118,180	921,100	4,039,280
2012. 9. 10.	2011-10-31	31,927,273	2,234,900	658,170	2,893,070
2012. 9. 10.	2011-10-31	40,818,000	2,857,260	841,460	3,698,720
2012. 9. 10.	2011-10-31	40,654,545	2,845,810	838,080	3,683,890
2012. 9. 10.	2011-10-31	31,927,273	2,234,900	658,170	2,893,070
2012. 9. 10.	2011-10-31	31,927,273	2,234,900	658,170	2,893,070
2012. 9. 10.	2011-10-31	29,018,182	2,031,270	598,200	2,629,470
2012. 9. 10.	2011-11-03	28,818,182	2,017,270	592,260	2,609,530
2012. 9. 10.	2011-11-11	39,909,091	2,793,630	813,490	3,607,120
2012. 9. 10.	2011-11-11	36,272,728	2,539,090	739,370	3,278,460
2012. 9. 10.	2011-11-11	34,545,455	2,418,180	704,160	3,122,340
2012. 9. 10.	2011-11-14	35,454,546	2,481,810	720,460	3,202,270
2012. 9. 10.	2011-11-16	48,636,364	3,404,540	986,280	4,390,820
2012. 9. 10.	2011-11-25	30,000,000	2,100,000	602,700	2,702,700
2012. 9. 10.	2011-11-25	95,727,273	6,700,900	1,923,150	8,624,050
2012. 9. 10.	2011-11-30	24,926,091	1,744,820	498,140	2,242,960
2012. 9. 10.	2011-11-30	24,926,091	1,744,820	498,140	2,242,960
2012. 9. 10.	2011-11-30	46,844,091	3,279,080	936,170	4,215,25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6

2012. 9. 10.	2011-11-30	50,000,000	3,500,000	999,250	4,499,250
2012. 9. 10.	2011-11-30	46,844,091	3,279,080	936,170	4,215,250
2012. 9. 10.	2011-11-30	34,080,455	2,385,630	681,090	3,066,720
2012. 9. 10.	2011-11-30	34,080,455	2,385,630	681,090	3,066,720
2012. 9. 10.	2011-11-30	30,106,364	2,107,440	601,660	2,709,100
2012. 9. 10.	2011-11-30	190,818,182	13,357,270	3,813,490	17,170,760
2012. 9. 10.	2011-11-30	84,090,909	5,886,360	1,680,550	7,566,910
2012. 9. 10.	2011-12-05	77,818,182	5,447,270	1,547,020	6,994,290
2012. 9. 10.	2011-12-07	44,000,000	3,080,000	872,870	3,952,870
2012. 9. 10.	2011-12-12	41,054,545	2,873,810	810,120	3,683,930
2012. 9. 10.	2011-12-27	30,106,364	2,107,440	584,590	2,692,030
2012. 9. 10.	2011-12-27	32,370,000	2,265,900	628,560	2,894,460
2012. 9. 10.	2011-12-27	24,800,000	1,736,000	481,560	2,217,560
2012. 9. 10.	2011-12-27	24,070,000	1,684,900	467,390	2,152,290
2012. 9. 10.	2011-12-27	25,579,091	1,790,530	496,680	2,287,210
2012. 9. 10.	2011-12-27	26,165,455	1,831,580	508,070	2,339,650
2012. 9. 10.	2011-12-27	41,400,000	2,898,000	803,900	3,701,900
2012. 9. 10.	2011-12-27	20,102,727	1,407,190	390,340	1,797,530
2012. 9. 10.	2011-12-29	56,272,727	3,939,090	1,090,330	5,029,420
2012. 9. 10.	2012-01-02	51,342,727	3,593,990	990,490	4,584,480
2012. 9. 10.	2012-01-02	71,545,455	5,008,180	1,380,240	6,388,420
2012. 9. 10.	2012-01-03	27,502,727	1,925,190	529,990	2,455,18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6

2012. 9. 10.	2012-01-03	51,342,727	3,593,990	989,410	4,583,400
2012. 9. 10.	2012-01-03	39,502,727	2,765,190	761,240	3,526,430
2012. 9. 10.	2012-01-05	42,738,182	2,991,670	821,800	3,813,470
2012. 9. 10.	2012-01-06	47,727,273	3,340,900	916,740	4,257,640
2012. 9. 10.	2012-01-09	40,816,819	2,857,170	781,430	3,638,600
2012. 9. 10.	2012-01-13	39,090,910	2,736,360	745,100	3,481,460
2012. 9. 10.	2012-01-19	39,000,000	2,730,000	738,460	3,468,460
2012. 9. 10.	2012-01-20	25,730,000	1,801,100	486,650	2,287,750
2012. 9. 10.	2012-01-20	30,106,364	2,107,440	569,420	2,676,860
2012. 9. 10.	2012-01-20	30,106,364	2,107,440	569,420	2,676,860
2012. 9. 10.	2012-01-20	25,579,091	1,790,530	483,790	2,274,320
2012. 9. 10.	2012-01-20	39,909,091	2,793,630	754,830	3,548,460
2012. 9. 10.	2012-01-20	21,497,000	1,504,790	406,580	1,911,370
2012. 9. 10.	2012-01-20	24,524,545	1,716,710	463,850	2,180,560
2012. 9. 10.	2012-01-26	31,727,000	2,220,890	596,070	2,816,960
2012. 9. 10.	2012-01-30	39,000,000	2,730,000	729,450	3,459,450
2012. 9. 10.	2012-01-31	43,636,364	3,054,540	815,240	3,869,780
2012. 9. 10.	2012-01-31	43,636,364	3,054,540	815,240	3,869,780
2012. 9. 10.	2012-01-31	43,636,364	3,054,540	815,240	3,869,780
2012. 9. 10.	2012-01-31	43,636,364	3,054,540	815,240	3,869,780
2012. 9. 10.	2012-01-31	43,636,364	3,054,540	815,240	3,869,78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6

2012. 9. 10.	2012-01-31	43,636,364	3,054,540	815,240	3,869,780
2012. 9. 10.	2012-01-31	43,636,364	3,054,540	815,240	3,869,780
2012. 9. 10.	2012-01-31	62,545,455	4,378,180	1,168,530	5,546,710
2012. 9. 10.	2012-01-31	31,660,849	2,216,250	591,510	2,807,760
2012. 9. 10.	2012-01-31	31,660,849	2,216,250	591,510	2,807,760
2012. 9. 10.	2012-01-31	31,660,849	2,216,250	591,510	2,807,760
2012. 9. 10.	2012-01-31	31,660,849	2,216,250	591,510	2,807,760
2012. 9. 10.	2012-01-31	38,547,727	2,698,340	720,170	3,418,510
2012. 9. 10.	2012-01-31	47,909,091	3,353,630	895,070	4,248,700
2012. 9. 10.	2012-01-31	43,636,364	3,054,540	815,240	3,869,780
2012. 9. 10.	2012-01-31	43,636,364	3,054,540	815,240	3,869,780
2012. 9. 10.	2012-01-31	43,636,364	3,054,540	815,240	3,869,780
2012. 9. 10.	2012-01-31	43,636,364	3,054,540	815,240	3,869,780
2012. 9. 10.	2012-01-31	43,636,364	3,054,540	815,240	3,869,780
2012. 9. 10.	2012-01-31	43,636,364	3,054,540	815,240	3,869,780
2012. 9. 10.	2012-01-31	43,636,364	3,054,540	815,240	3,869,780
2012. 9. 10.	2012-01-31	43,636,364	3,054,540	815,240	3,869,780
2012. 9. 10.	2012-01-31	43,636,364	3,054,540	815,240	3,869,780
2012. 9. 10.	2012-01-31	43,636,364	3,054,540	815,240	3,869,780
2012. 9. 10.	2012-01-31	43,636,364	3,054,540	815,240	3,869,780
2012. 9. 10.	2012-01-31	43,636,364	3,054,540	815,240	3,869,780
2012. 9. 10.	2012-01-31	43,636,364	3,054,540	815,240	3,869,780
2012. 9. 10.	2012-01-31	43,636,364	3,054,540	815,240	3,869,78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6

2012. 9. 10.	2012-01-31	30,697,920	2,148,850	573,520	2,722,370
2012. 9. 10.	2012-01-31	30,697,920	2,148,850	573,520	2,722,370
2012. 9. 10.	2012-01-31	30,697,920	2,148,850	573,520	2,722,370
2012. 9. 10.	2012-01-31	35,363,637	2,475,450	660,690	3,136,140
2012. 9. 10.	2012-01-31	35,363,636	2,475,450	660,690	3,136,140
2012. 9. 10.	2012-02-08	50,818,182	3,557,270	940,890	4,498,160
2012. 9. 10.	2012-02-10	61,545,000	4,308,150	1,136,920	5,445,070
2012. 9. 10.	2012-02-14	60,636,000	4,244,520	1,115,030	5,359,550
2012. 9. 10.	2012-02-15	60,636,000	4,244,520	1,113,750	5,358,270
2012. 9. 10.	2012-02-15	30,106,364	2,107,440	552,980	2,660,420
2012. 9. 10.	2012-02-16	36,595,455	2,561,680	671,410	3,233,090
2012. 9. 10.	2012-02-16	44,574,091	3,120,180	817,790	3,937,970
2012. 9. 10.	2012-02-17	6,363,000	445,410	116,600	562,010
2012. 9. 10.	2012-02-17	62,454,545	4,371,810	1,144,530	5,516,340
2012. 9. 10.	2012-02-22	40,816,819	2,857,170	743,710	3,600,880
2012. 9. 10.	2012-02-27	25,929,799	1,815,080	469,730	2,284,810
2012. 9. 10.	2012-02-27	25,929,799	1,815,080	469,730	2,284,810
2012. 9. 10.	2012-02-27	31,194,393	2,183,600	565,110	2,748,710
2012. 9. 10.	2012-02-27	31,194,393	2,183,600	565,110	2,748,710
2012. 9. 10.	2012-02-27	31,194,393	2,183,600	565,110	2,748,710
2012. 9. 10.	2012-02-27	31,194,393	2,183,600	565,110	2,748,71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6

2012. 9. 10.	2012-02-27	31,194,393	2,183,600	565,110	2,748,710
2012. 9. 10.	2012-02-27	31,194,393	2,183,600	565,110	2,748,710
2012. 9. 10.	2012-02-27	31,168,607	2,181,800	564,640	2,746,440
2012. 9. 10.	2012-02-27	31,194,393	2,183,600	565,110	2,748,710
2012. 9. 10.	2012-02-28	57,545,454	4,028,180	1,041,270	5,069,450
2012. 9. 10.	2012-02-28	77,818,182	5,447,270	1,408,110	6,855,380
2012. 9. 10.	2012-02-29	44,931,818	3,145,220	812,090	3,957,310
2012. 9. 10.	2012-02-29	49,909,000	3,493,630	902,040	4,395,670
2012. 9. 10.	2012-02-29	110,000,000	7,700,000	1,988,140	9,688,140
2012. 9. 10.	2012-02-29	59,000,000	4,130,000	1,066,360	5,196,360
2012. 9. 10.	2012-03-05	33,381,818	2,336,720	599,830	2,936,550
2012. 9. 10.	2012-03-05	33,190,143	2,323,310	596,390	2,919,700
2012. 9. 10.	2012-03-05	33,190,143	2,323,310	596,390	2,919,700
2012. 9. 10.	2012-03-05	33,190,143	2,323,310	596,390	2,919,700
2012. 9. 10.	2012-03-05	33,190,143	2,323,310	596,390	2,919,700
2012. 9. 10.	2012-03-05	33,190,143	2,323,310	596,390	2,919,700
2012. 9. 10.	2012-03-08	38,727,273	2,710,900	693,440	3,404,340
2012. 9. 10.	2012-03-09	38,727,273	2,710,900	692,630	3,403,530
2012. 9. 10.	2012-03-13	36,272,728	2,539,090	645,680	3,184,770
2012. 9. 10.	2012-03-14	40,295,455	2,820,680	716,440	3,537,120
2012. 9. 10.	2012-03-15	131,727,273	9,220,900	2,339,340	11,560,240
2012. 9. 10.	2012-03-15	99,909,091	6,993,630	1,774,270	8,767,90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6

2012. 9. 10.	2012-03-16	67,636,364	4,734,540	1,199,720	5,934,260
2012. 9. 10.	2012-03-16	102,636,364	7,184,540	1,820,550	9,005,090
2012. 9. 10.	2012-03-16	52,568,182	3,679,770	932,440	4,612,210
2012. 9. 10.	2012-03-16	74,454,545	5,211,810	1,320,670	6,532,480
2012. 9. 10.	2012-03-19	57,181,818	4,002,720	1,010,680	5,013,400
2012. 9. 10.	2012-03-19	32,454,546	2,271,810	573,630	2,845,440
2012. 9. 10.	2012-03-20	59,909,091	4,193,630	1,057,620	5,251,250
2012. 9. 10.	2012-03-20	39,645,455	2,775,180	699,890	3,475,070
2012. 9. 10.	2012-03-21	121,363,636	8,495,450	2,140,000	10,635,450
2012. 9. 10.	2012-03-21	103,172,727	7,222,090	1,819,230	9,041,320
2012. 9. 10.	2012-03-21	74,454,545	5,211,810	1,312,850	6,524,660
2012. 9. 10.	2012-03-21	30,106,364	2,107,440	530,850	2,638,290
2012. 9. 10.	2012-03-22	43,040,909	3,012,860	758,030	3,770,890
2012. 9. 10.	2012-03-22	63,636,364	4,454,540	1,120,750	5,575,290
2012. 9. 10.	2012-03-22	51,818,182	3,627,270	912,610	4,539,880
2012. 9. 10.	2012-03-22	27,075,455	1,895,280	476,840	2,372,120
2012. 9. 10.	2012-03-23	55,909,091	3,913,630	983,480	4,897,110
2012. 9. 10.	2012-03-23	48,090,909	3,366,360	845,960	4,212,320
2012. 9. 10.	2012-03-23	43,545,455	3,048,180	766,000	3,814,180
2012. 9. 10.	2012-03-23	44,090,909	3,086,360	775,600	3,861,960
2012. 9. 10.	2012-03-23	41,636,000	2,914,520	732,410	3,646,93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6

2012. 9. 10.	2012-03-23	34,090,910	2,386,360	599,690	2,986,050
2012. 9. 10.	2012-03-26	51,818,182	3,627,270	908,260	4,535,530
2012. 9. 10.	2012-03-26	38,181,819	2,672,720	669,240	3,341,960
2012. 9. 10.	2012-03-27	87,336,364	6,113,540	1,528,980	7,642,520
2012. 9. 10.	2012-03-27	109,090,909	7,636,360	1,909,850	9,546,210
2012. 9. 10.	2012-03-27	43,636,364	3,054,540	763,930	3,818,470
2012. 9. 10.	2012-03-28	49,181,818	3,442,720	859,980	4,302,700
2012. 9. 10.	2012-03-28	59,090,909	4,136,360	1,033,260	5,169,620
2012. 9. 10.	2012-03-28	129,909,091	9,093,630	2,271,580	11,365,210
2012. 9. 10.	2012-03-29	60,454,545	4,231,810	1,055,830	5,287,640
2012. 9. 10.	2012-03-29	47,136,364	3,299,540	823,220	4,122,760
2012. 9. 10.	2012-03-29	68,090,909	4,766,360	1,189,200	5,955,560
2012. 9. 10.	2012-03-30	51,068,182	3,574,770	890,820	4,465,590
2012. 9. 10.	2012-03-30	51,068,182	3,574,770	890,820	4,465,590
2012. 9. 10.	2012-03-30	53,636,364	3,754,540	935,620	4,690,160
2012. 9. 10.	2012-03-30	54,454,545	3,811,810	949,900	4,761,710
2012. 9. 10.	2012-03-30	44,318,182	3,102,270	773,080	3,875,350
2012. 9. 10.	2012-03-30	44,318,182	3,102,270	773,080	3,875,350
2012. 9. 10.	2012-03-30	46,090,909	3,226,360	804,000	4,030,360
2012. 9. 10.	2012-03-30	43,545,455	3,048,180	759,600	3,807,780
2012. 9. 10.	2012-03-30	107,090,909	7,496,360	1,868,090	9,364,450
2012. 9. 10.	2012-03-30	30,363,636	2,125,450	529,660	2,655,11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6

2012. 9. 10.	2012-03-30	103,988,182	7,279,170	1,813,960	9,093,130
2012. 9. 10.	2012-03-30	54,020,909	3,781,460	942,330	4,723,790
2012. 9. 10.	2012-03-30	67,670,909	4,736,960	1,180,440	5,917,400
2012. 9. 10.	2012-03-30	32,727,273	2,290,900	570,890	2,861,790
2012. 9. 10.	2012-04-03	147,181,818	10,302,720	2,555,070	12,857,790
2012. 9. 10.	2012-04-03	49,090,909	3,436,360	852,210	4,288,570
2012. 9. 10.	2012-04-03	40,909,000	2,863,630	710,170	3,573,800
2012. 9. 10.	2012-04-04	68,181,818	4,772,720	1,182,190	5,954,910
2012. 9. 10.	2012-04-04	61,363,636	4,295,450	1,063,980	5,359,430
2012. 9. 10.	2012-04-06	41,636,000	2,914,520	720,170	3,634,690
2012. 9. 10.	2012-04-06	67,090,909	4,696,360	1,160,460	5,856,820
2012. 9. 10.	2012-04-06	38,022,727	2,661,590	657,670	3,319,260
2012. 9. 10.	2012-04-10	258,181,818	18,072,720	4,444,070	22,516,790
2012. 9. 10.	2012-04-10	129,818,182	9,087,270	2,234,550	11,321,820
2012. 9. 10.	2012-04-10	59,000,000	4,130,000	1,015,560	5,145,560
2012. 9. 10.	2012-04-10	72,181,818	5,052,720	1,242,450	6,295,170
2012. 9. 10.	2012-04-12	28,997,273	2,029,800	497,900	2,527,700
2012. 9. 10.	2012-04-12	34,454,545	2,411,810	591,610	3,003,420
2012. 9. 10.	2012-04-12	24,070,000	1,684,900	413,300	2,098,200
2012. 9. 10.	2012-04-13	25,579,091	1,790,530	438,670	2,229,200
2012. 9. 10.	2012-04-13	56,363,636	3,945,450	966,630	4,912,08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6

2012. 9. 10.	2012-04-16	145,090,909	10,156,360	2,479,160	12,635,520
2012. 9. 10.	2012-04-17	32,370,000	2,265,900	552,420	2,818,320
2012. 9. 10.	2012-04-17	32,370,000	2,265,900	552,420	2,818,320
2012. 9. 10.	2012-04-18	42,090,909	2,946,360	717,430	3,663,790
2012. 9. 10.	2012-04-18	25,136,363	1,759,540	428,430	2,187,970
2012. 9. 10.	2012-04-18	25,136,363	1,759,540	428,430	2,187,970
2012. 9. 10.	2012-04-18	110,090,909	7,706,360	1,876,490	9,582,850
2012. 9. 10.	2012-04-19	109,090,909	7,636,360	1,857,160	9,493,520
2012. 9. 10.	2012-04-19	44,454,545	3,111,810	756,790	3,868,600
2012. 9. 10.	2012-04-19	90,545,455	6,338,180	1,541,430	7,879,610
2012. 9. 10.	2012-04-19	47,636,364	3,334,540	810,950	4,145,490
2012. 9. 10.	2012-04-20	60,636,000	4,244,520	1,030,980	5,275,500
2012. 9. 10.	2012-04-20	62,545,455	4,378,180	1,063,450	5,441,630
2012. 9. 10.	2012-04-20	62,545,455	4,378,180	1,063,450	5,441,630
2012. 9. 10.	2012-04-23	39,090,909	2,736,360	662,190	3,398,550
2012. 9. 10.	2012-04-23	33,181,819	2,322,720	562,090	2,884,810
2012. 9. 10.	2012-04-24	42,898,636	3,002,900	725,800	3,728,700
2012. 9. 10.	2012-04-24	29,000,000	2,030,000	490,650	2,520,650
2012. 9. 10.	2012-04-24	27,118,182	1,898,270	458,800	2,357,070
2012. 9. 10.	2012-04-25	39,076,364	2,735,340	660,300	3,395,640
2012. 9. 10.	2012-04-25	31,092,727	2,176,490	525,390	2,701,880
2012. 9. 10.	2012-04-25	59,000,000	4,130,000	996,980	5,126,98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6

2012. 9. 10.	2012-04-26	34,090,910	2,386,360	575,340	2,961,700
2012. 9. 10.	2012-04-26	60,499,091	4,234,930	1,021,030	5,255,960
2012. 9. 10.	2012-04-26	111,636,364	7,814,540	1,884,070	9,698,610
2012. 9. 10.	2012-04-26	50,090,909	3,506,360	845,380	4,351,740
2012. 9. 10.	2012-04-27	43,545,455	3,048,180	733,990	3,782,170
2012. 9. 10.	2012-04-27	57,422,727	4,019,590	967,900	4,987,490
2012. 9. 10.	2012-04-27	32,727,273	2,290,900	551,640	2,842,540
2012. 9. 10.	2012-04-27	44,000,000	3,080,000	741,660	3,821,660
2012. 9. 10.	2012-04-27	23,636,364	1,654,540	398,400	2,052,940
2012. 9. 10.	2012-04-27	24,926,091	1,744,820	420,140	2,164,960
2012. 9. 10.	2012-04-27	51,342,727	3,593,990	865,420	4,459,410
2012. 9. 10.	2012-04-27	51,342,727	3,593,990	865,420	4,459,410
2012. 9. 10.	2012-04-27	35,000,000	2,450,000	589,960	3,039,960
2012. 9. 10.	2012-04-27	73,545,455	5,148,180	1,239,670	6,387,850
2012. 9. 10.	2012-04-27	67,090,909	4,696,360	1,130,880	5,827,240
2012. 9. 10.	2012-04-27	62,090,909	4,346,360	1,046,600	5,392,960
2012. 9. 10.	2012-04-30	56,522,727	3,956,590	949,170	4,905,760
2012. 9. 10.	2012-04-30	66,181,818	4,632,720	1,111,380	5,744,100
2012. 9. 10.	2012-04-30	45,567,728	3,189,740	765,210	3,954,950
2012. 9. 10.	2012-04-30	38,547,727	2,698,340	647,320	3,345,660
2012. 9. 10.	2012-04-30	50,956,818	3,566,970	855,710	4,422,68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6

2012. 9. 10.	2012-04-30	34,407,273	2,408,500	577,790	2,986,290
2012. 9. 10.	2012-04-30	42,909,091	3,003,630	720,560	3,724,190
2012. 9. 10.	2012-04-30	37,048,182	2,593,370	622,140	3,215,510
2012. 9. 10.	2012-04-30	71,636,364	5,014,540	1,202,980	6,217,520
2012. 9. 10.	2012-04-30	137,727,273	9,640,900	2,312,850	11,953,750
2012. 9. 10.	2012-04-30	60,363,636	4,225,450	1,013,680	5,239,130
2012. 9. 10.	2012-04-30	28,195,000	1,973,650	473,470	2,447,120
2012. 9. 10.	2012-04-30	36,775,000	2,574,250	617,560	3,191,810
2012. 9. 10.	2012-04-30	121,727,273	8,520,900	2,044,160	10,565,060
2012. 9. 10.	2012-04-30	99,116,364	6,938,140	1,664,450	8,602,590
2012. 9. 10.	2012-04-30	51,363,636	3,595,450	862,540	4,457,990
2012. 9. 10.	2012-05-02	42,090,000	2,946,300	705,040	3,651,340
2012. 9. 10.	2012-05-03	70,727,273	4,950,900	1,183,260	6,134,160
2012. 9. 10.	2012-05-04	34,090,910	2,386,360	569,620	2,955,980
2012. 9. 10.	2012-05-04	36,090,909	2,526,360	603,040	3,129,400
2012. 9. 10.	2012-05-07	59,000,000	4,130,000	982,110	5,112,110
2012. 9. 10.	2012-05-07	59,000,000	4,130,000	982,110	5,112,110
2012. 9. 10.	2012-05-09	45,347,273	3,174,300	752,940	3,927,240
2012. 9. 10.	2012-05-09	46,272,727	3,239,090	768,300	4,007,390
2012. 9. 10.	2012-05-09	40,545,000	2,838,150	673,200	3,511,350
2012. 9. 10.	2012-05-09	105,454,545	7,381,810	1,750,960	9,132,770
2012. 9. 10.	2012-05-10	68,000,000	4,760,000	1,127,640	5,887,64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6

2012. 9. 10.	2012-05-10	44,272,000	3,099,040	734,150	3,833,190
2012. 9. 10.	2012-05-10	29,000,000	2,030,000	480,900	2,510,900
2012. 9. 10.	2012-05-11	40,454,545	2,831,810	670,000	3,501,810
2012. 9. 10.	2012-05-11	40,818,182	2,857,270	676,020	3,533,290
2012. 9. 10.	2012-05-11	83,272,727	5,829,090	1,379,150	7,208,240
2012. 9. 10.	2012-05-11	34,407,273	2,408,500	569,850	2,978,350
2012. 9. 10.	2012-05-11	80,363,636	5,625,450	1,330,980	6,956,430
2012. 9. 10.	2012-05-14	50,909,000	3,563,630	839,940	4,403,570
2012. 9. 10.	2012-05-15	49,090,000	3,436,300	808,900	4,245,200
2012. 9. 10.	2012-05-15	43,565,455	3,049,580	717,860	3,767,440
2012. 9. 10.	2012-05-15	31,092,727	2,176,490	512,330	2,688,820
2012. 9. 10.	2012-05-16	36,829,091	2,578,030	606,080	3,184,110
2012. 9. 10.	2012-05-17	49,454,546	3,461,810	812,830	4,274,640
2012. 9. 10.	2012-05-17	63,636,364	4,454,540	1,045,910	5,500,450
2012. 9. 10.	2012-05-18	32,363,636	2,265,450	531,240	2,796,690
2012. 9. 10.	2012-05-18	44,818,182	3,137,270	735,680	3,872,950
2012. 9. 10.	2012-05-18	66,181,818	4,632,720	1,086,360	5,719,080
2012. 9. 10.	2012-05-18	54,545,455	3,818,180	895,350	4,713,530
2012. 9. 10.	2012-05-21	127,181,818	8,902,720	2,079,670	10,982,390
2012. 9. 10.	2012-05-22	34,181,000	2,392,670	558,200	2,950,870
2012. 9. 10.	2012-05-22	49,454,000	3,461,780	807,620	4,269,40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6

2012. 9. 10.	2012-05-22	31,000,000	2,170,000	506,260	2,676,260
2012. 9. 10.	2012-05-22	34,090,910	2,386,360	556,730	2,943,090
2012. 9. 10.	2012-05-23	40,454,545	2,831,810	659,800	3,491,610
2012. 9. 10.	2012-05-23	40,172,727	2,812,090	655,200	3,467,290
2012. 9. 10.	2012-05-24	66,545,455	4,658,180	1,083,950	5,742,130
2012. 9. 10.	2012-05-24	37,818,182	2,647,270	616,010	3,263,280
2012. 9. 10.	2012-05-24	59,454,545	4,161,810	968,450	5,130,260
2012. 9. 10.	2012-05-25	57,181,818	4,002,720	930,220	4,932,940
2012. 9. 10.	2012-05-25	70,727,273	4,950,900	1,150,580	6,101,480
2012. 9. 10.	2012-05-25	85,909,091	6,013,630	1,397,560	7,411,190
2012. 9. 10.	2012-05-25	74,454,545	5,211,810	1,211,220	6,423,030
2012. 9. 10.	2012-05-25	22,690,910	1,588,360	369,130	1,957,490
2012. 9. 10.	2012-05-29	50,090,909	3,506,360	810,660	4,317,020
2012. 9. 10.	2012-05-29	55,454,545	3,881,810	897,470	4,779,280
2012. 9. 10.	2012-05-30	40,909,091	2,863,630	661,200	3,524,830
2012. 9. 10.	2012-05-30	66,545,455	4,658,180	1,075,560	5,733,740
2012. 9. 10.	2012-05-31	45,567,727	3,189,740	735,540	3,925,280
2012. 9. 10.	2012-05-31	82,272,727	5,759,090	1,328,030	7,087,120
2012. 9. 10.	2012-05-31	46,363,636	3,245,450	748,400	3,993,850
2012. 9. 10.	2012-05-31	55,454,545	3,881,810	895,140	4,776,950
2012. 9. 10.	2012-05-31	44,318,182	3,102,270	715,370	3,817,640
2012. 9. 10.	2012-05-31	72,545,455	5,078,180	1,171,020	6,249,20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6

2012. 9. 10.	2012-05-31	19,854,545	1,389,810	320,480	1,710,290
2012. 9. 10.	2012-05-31	22,069,091	1,544,830	356,230	1,901,060
2012. 9. 10.	2012-05-31	51,068,182	3,574,770	824,330	4,399,100
2012. 9. 10.	2012-05-31	40,454,545	2,831,810	653,010	3,484,820
2012. 9. 10.	2012-05-31	34,454,545	2,411,810	556,160	2,967,970
2012. 9. 10.	2012-05-31	43,565,455	3,049,580	703,220	3,752,800
2012. 9. 10.	2012-05-31	39,909,091	2,793,630	644,200	3,437,830
2012. 9. 10.	2012-06-05	56,454,545	3,951,810	905,350	4,857,160
2012. 9. 10.	2012-06-07	71,636,364	5,014,540	1,145,810	6,160,350
2012. 9. 10.	2012-06-07	71,727,273	5,020,900	1,147,270	6,168,170
2012. 9. 10.	2012-06-07	46,363,637	3,245,450	741,580	3,987,030
2012. 9. 10.	2012-06-08	40,001,818	2,800,120	638,980	3,439,100
2012. 9. 10.	2012-06-08	109,090,909	7,636,360	1,742,610	9,378,970
합계		25,539,637,660	1,787,772,310	512,955,100	2,300,727,410

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6

별지

취득세 납부 내역

관련 지방자치단체	취득세 납부 내역(단위: 원)		
	2011년	2012년	합계
용인시	79,202,150	4,243,720	83,445,870
대구 북구	362,050,410	228,188,990	590,239,400
인천 서구	346,888,850	767,198,190	1,114,087,040

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6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의 과세권을 갖는다.

제5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위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방세의 세목)

①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세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 지역에서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② 도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제12조(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의 조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6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권의 귀속이나 그 밖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견을 달리하여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하나의 도내에 관한 것은 도지사, 둘 이상의 도에 걸쳐 있는 것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결정의 청구를 받아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 지체 없이 그 뜻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제53조(가산세의 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1.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6

제55조(납세의 고지)

①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고지하여야 한다.

▣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과세 주체)

이 법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세의 과세 주체가 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그 건설기계나 차량은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8조(납세지)

① 취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차량: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그 납세지로 한다.

제18조(징수방법)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6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85조(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분"이란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2.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3.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자 또는 확정신고자로서 해당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4. "법인세분"이란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5.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6.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①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6

제87조(납세지 등)

① 소득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수시부과한다.

2. 법인세분: 법인세의 납세지. 다만, 연결집단의 각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의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9조제1항의 납세지로 하고,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부과한다.

제96조(특별징수)

①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제89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특별징수세액"이라 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동시에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소득분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특별징수세액을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반기)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납세지)

① 취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차량: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6

제125조(납세지)

등록세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일 현재 등기 또는 등록할 재산의 소재지나 등기 또는 등록권자의 주소지 해당사무소 또는 영업소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한다.

2의 2. 자동차등록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지

▣ 구 자동차관리법(2015. 8. 11. 법률 제13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9조(신규등록의 거부)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자동차의 취득에 관한 정당한 원인행위가 없거나 등록 신청 사항에 거짓이 있는 경우

제13조(말소등록)

③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

4.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 구 자동차등록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동차 저당권의 등록을 말한다.
2. "사용본거지"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6

제5조(등록사무의 관할 등)

① 등록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가 관할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등록사무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도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해당 자동차를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 및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안의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8조(신규등록 신청)

신규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자동차의 소유권 및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와 검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구 자동차등록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사용본거지"라 함은 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주된 사용지로서 자동차관리에 관한 각종 통지가 도달될 수 있는 일정한 주소지를 말한다.

▣ 구 자동차등록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자동차의 사용본거지)

① 등록령 제2조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2.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인 경우: 그 법인등의 주사무소 소재지

② 제1항 제2호의 장소 외의 다른 장소를 등록령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이하 "사용본거지"라 한다)로 인정받으려는 자동차 소유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령 제5조에 따른 등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6

록관청(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신규등록 신청 등)

① 등록령 제18조에 따라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에 따른 서류 또는 수입확인증이나 수입사실증명서에 따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동차제작증[신조차(新造車)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수입사실증명서(수입차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5. 신규검사증명서(등록령 제20조에 따라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자동차인 경우와 법 제30조의4에 따라 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만 해당한다)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허가·등록·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만 해당한다)
7. 삭제 <2010.6.11>
8.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만 해당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등록관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말하며,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말한다. 이하 "사용본거지확인정보"라 한다)와 제1항 각 호(제4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의 서류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한다)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구 서울특별시 시세조례(2014. 3. 20. 서울특별시 조례 제5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세율)

부동산 및 부동산 외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은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세율로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6

제5조(신고납부)

① 취득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계 증빙서류를 갖추어 해당 물건의 과세표준에 제4조와 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 취득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및 그 영업소의 주소
2. 취득연월일과 취득원인
3. 취득물건의 소재지
6. 차량·기계장비: 종류, 연식, 용도
13. 취득물건의 가격 및 필요경비
14. 취득물건의 전소유자 또는 권리자의 취득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및 그 영업소의 주소
15. 그 밖의 참고사항

▣ 서울특별시 시세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세목)

① 시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 보통세는 다음과 같다.

1. 취득세

제5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시세의 부과·징수(이하 "부과징수"라 한다)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따로 규정이 있거나 다른 자치단체와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6

제10조(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

①「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사무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서울특별시 관할 이외 지역의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신고업무를「지방세법」 제20조 및「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록사무를 처리하는 다른 등록관청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할 이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취득세 신고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④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2항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 변경·포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발급)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6

주사무소(이하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 6. 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등록신청과 등록증발급등)

① 영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에 의한다. 끝.